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13.3.23>

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
신청인	대표자	생년월일
	주 소	
	협의회명 (전화번호:)	

관리 내용	설립 목적	
	위치	
	내용	

규모	단지 총 면적(㎡)	조성(계획) 면적(㎡)
	입주업체 수 개 공장	자본 규모 백만원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시 · 도지사 귀하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첨부서류	1.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. 정관 1부 3.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.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.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	수수료 없 음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(관계 법령 등)	→	설립인가	→	공고
신청인		처리기관(담당부서): 산업통상자원부, 시 · 도, 시 · 군 · 구 공장담당부서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